

제27차 CODEX 총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권 우 정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1. 서 언

총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CAC)는 Codex의 정책방향결정 및 하부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기준 및 규격안을 최종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AC는 이태리의 FAO 본부 및 스위스의 WHO 본부에서 1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제27차 CAC 회의는 2004. 6. 28 ~ 7. 3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89개의 회원국과 37개의 국제기구의 대표자 등 402명이 참석하였다.

주요한 의제로는 Codex 기준·규격(안) 제·개정 승인 및 주요현안논의, 비임상용 항생제 사용 관련 task force 구성 및 의장국 유치 논의, Codex 으로 자세한 의제목록은 다음과 같다.

□ 회의의제

의제 번호	회 의 의 제 명	문서 번호
의제1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ALINORM 04/27/1,1A,1B
의제2	제53차 및 54차 집행이사회에 관한 의장 보고(Report by the Chairperson on the 53rd and 54th Sess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ALINORM 04/27/3, 4
의제3	규정집 개정 (Amendment to the Procedural Manual)	ALINORM 04/27/5, 5A
의제4	규격(안) 및 관련문서 검토 (Consideration of Draft Standard and Related Texts)	ALINORM 04/27/6, 6A

의제 번호	외 의 의 제 명	문서번호
의제5	규격(초안) 및 관련문서 검토 (Consideration of Draft Standard and Related Texts)	ALINORM 04/27/7, 7A
의제6	규격 및 관련문서 철회 및 폐지 (Withdrawal or Revocation of Existing Codex Standards and Related Texts)	ALINORM 04/27/8
의제7	신규 규격과 관련문서 설정제안 및 작업중지 규격 (Proposals for the Elaboration of New Standards and Related Texts and for the Discontinuation of Work)	ALINORM 04/27/9
의제8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Financial and Budgetary Matters)	ALINORM 04/27/10
의제9	Codex 위원회 전략계획 (Strategic Planning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LINORM 04/27/10A
의제10	의장 및 부의장 임명 (Election of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s of the Commission)	ALINORM 04/27/2
의제11	각 분과위원회 및 국가간 임시 작업단 주최국 선정 (Designation of Countries responsible for Appointing the Chairpersons of Codex Committees and ad hoc Task Forces)	ALINORM 04/27/10B
의제12	FAO/WHO 합동평가팀 후속조치 (Implementation of the Joint FAO/WHO Evaluat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and other FAO and WHO Work on Food Standards)	ALINORM 04/27/10C
의제13	Codex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 회부사항 (Matters Arising from Reports of Codex Committee and Task Forces)	ALINORM 04/27/10D,10D-Add.1
의제14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Relations between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INORM 04/27/10E
의제15	Codex 참여증진을 위한 FAO/WHO 프로젝트 및 신탁기금 (FAO/WHO Project and Fund for Enhanced Participation in Codex)	ALINORM 04/27/10F
의제16	FAO 및 WHO에서 제기된 기타 사안 (Other Matters arising from FAO and WHO)	ALINORM 04/27/10F
의제17	기타 사업 (Other Business)	
의제18	보고서 채택 (Adoption of the Report)	

2. 회의논의결과

(1) 제53차 및 54차 집행이사회에 관한 의장보고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의장의 보고 내용으로 제53차 집행이사회에서는 전략 및 관리적 사항, 비용절감조치를 포함한 비용예산, 기획 및 프로그래밍 사항, 과학적 자문규정을 위한 우선순위설정, FAO/WHO 신탁기금과 관련된 사항, Codex 하부분과위원회 및 작업반에서 회부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제54차 집행이사회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 작업반 및 동물사료 작업반의 향후 가능한 작업을 포함한 신규작업의 제안서, 작업중지 제안서, Codex 하부분과위원회 및 작업반에서 회부된 사항,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과학적 자문과 관련된 사항 등을 총회에 자문 요청하였다.

(2) Codex 규정집 개정

Codex 규정집에는 정부간 기구에 적절한 운영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동 규정집에는 Codex 위원회의 회원자격, Codex 위원회의 회의의제 특징, 투표절차, 참관인, Codex 위원회의 기록 및 보고서 작성, 기준·규격의 설정절차, 예산 할당 및 비용, Codex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금번 총회에서는 집행이사회 확대 및 기능강화, 예산 및 지출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참관인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행이사회 확대, 집행이사회 기능, 예산 및 비용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규정 개정(초안) VIII.5 참관인- 개정(초안)은 투표결과 정족수에 도달하지 않아, 차기 총회로 회부되었다. 또한, 기타 개정 사항으로 의장선임에 관한 기준안,

Codex 분과위원회 및 정부간특별작업반의 의장국에 대한 지침안, Codex 분과위원회 및 정부간특별작업반의 회의운영에 관한 지침안, Codex 분과위원회 및 정부간특별작업반의 의장에 대한 지침안,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과 관련된 사항, 단일실험실에서 인정한 분석방법원칙의 선정을 위한 일반기준, Codex 사용을 위한 분석용어에 관한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해분석용어의 정의를 잠정적으로 채택하고 관련분과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추적성(Traceability/Product Tracing)의 정의도 채택되었으며, 추적성 적용 원칙에 관한 신규작업의 제안을 위해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에 요청하였다.

(3) Codex 규격안 및 관련문서 검토

동 의제에서는 Codex 규격 및 관련문서 설정에 대한 8단계 일반절차와 신속절차의 5단계로 제출된 규격 및 관련문서를 검토하고 하부분과위원회에서 6, 7단계가 생략된 5단계로 제출된 규격도 검토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전 총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써, Bovine Somatotropin의 MRL(안)(Draft MRLs for Bovine Somatotropin)은 26차 총회(2003. 6)에서 8단계로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써 금번 총회에서도 계속 8단계로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서 회부된 CCFAC에서 적용하는 위해분석원칙안(Draft Risk Analysis Applied by the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와 식품 또는 식품군중 오염물질 및 독소의 노출량평가를 위한 CCFAC 원칙(Draft CCFAC Policy for Exposure Assessment of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or Food

Groups)은 제20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CCGP)에
서의 검토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분과**

동 분과에서 제안한 8단계 및 5/8단계의 식품
첨가물의 일반기준중 Table 1의 수정초안 및 안
(Draft and Proposed Draft Revision to Table 1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을
채택하고, 3년 이내에 CCFAC의 검토 수행 및
다양한 종류의 식품 및 다양한 지역에서의
benzoates의 사용기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
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8단계 및 5/8단계의
땅콩중 Aflatoxin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
행규범(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Peanuts), 식품중 납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Lead Contamination
in Food), 식품첨가물의 성상 및 순도기준(초안)
(Proposed Draft Specifications for the Identity and
Purity of Food Additives (Category I), 식품첨가
물의 INS 번호 개정(초안) (Proposed Draft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을 채택하였다.

○ **어류 및 어류제품(Fish and Fishery
Products)분과**

염장 대서양 청어 및 염장 청어에 대한 규격
(안) (Draft Standard for Atlantic Herring and
Salted Sprats)의 규격안을 8단계로 채택하고 금
번 총회에서 채택한 정의와 Codex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의 일관성을 위해 “product
tracing” 문구를 “traceability”를 추가하고 어류 및

어류제품 모델증명서(안) (위생증명서)(Draft
Model Certificate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Sanitary Certificate)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급속
동결바닷가재 규격개정(안) (Draft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Quick Frozen Lobsters)과 어
류 및 어류제품의 실행규범(초안) (양식 및 급속
동결코팅어류제품에 관한 조항) (Proposed Draft
Code of Practice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section on Aquaculture and on Quick Frozen
Coated Fish Products))중 양식에 관한 조항을 5
단계로 채택하고, 급속동결코팅어류제품에 관한
조항은 5/8단계로 채택하였다.

○ **식품위생(Food Hygiene)분과**

총회는 유 및 유제품 실행규범(안) (Draft
Code of Practice for Milk and Milk Products) 별첨
에 lactoperoxidase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채택하
고, 건조유의 위생실행규범(CAC/RCP 31-1983)
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분과**

식품안전 긴급상황 발생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서 (초안)(Proposed Draft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Safety Emergency)를 5/8단계에서 원칙 및 지침
서(초안)를 수정하였다.

○ **식품표시(Food Labelling)분과**

총회는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 지침서
(안)(Draft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를 채택하고 향후 영양 및 특수용
도식품분과위원회에서 현재 개발중인 건강강조

표시의 과학적인 근거기준과 관련하여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에서 동 지침서의 검토가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급속동결생선스틱(생선핑거), 생선조각 및 생선필레, 반죽된 형태(표시 조항(Draft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Quick Frozen Fish Sticks (Fish Fingers), Fish Portions and Fish Fillets, Breaded or in Batter (Labelling Section))을 8단계로 채택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생선함량 측정을 위한 방법 및 질소전환계수를 수정할 예정이다.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 지침서 개정(안) : 별첨 2 개정(안) - 표 1과 2 (Draft Amendment to the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 Draft Revised Annex 2 - Tables 1 and 2)도 수정하여 8단계로 채택하였다.

○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분과

총회는 동 분과에서 제안한 시료채취 일반 지침서(안)(Draft General Guidelines on Sampling), 측정 불확실성에 관한 지침서(안)(Draft Guidelines on Measurement Uncertainty), 첨가물 및 오염물질 일반분석법(Methods of Analysis for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올리브유 및 올리브 포마스유 규격에 포함될 분석방법(Methods of Analysis for inclusion in the Standard for Olive oils and Olive Pomace Oils), 지명된 야채유 규격에 포함될 분석방법(현행분석법 수정)(Methods of Analysis for inclusion in the Standard for Named Vegetable oils)을 8단계로 채택하였다.

(4) Codex 규격안 및 관련문서 검토

총회는 하부분과위원회에서 5단계로 제안한

규격초안 및 관련문서의 주요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분과

총회는 도정된 쌀, 밀 곡립, 감자, 구근채소류, 엽경채소류 및 기타 채소류의 카드뮴 최대허용기준(초안) (Proposed Draft Maximum Levels for Cadmium in rice : polished ; wheat grain ; potato ; stem and root vegetables ; leafy vegetables ; and other vegetables)을 5단계 채택 후 6단계로 진행시켰으나, 도정된 쌀 중 카드뮴 최대허용기준(초안)은 특정 집단의 섭취량이 제안된 최대허용기준에서 PTWI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CCFAC에서의 논의를 위해 3단계로 반려하였다. 카드뮴은 2005년 2월 JECFA에서 평가될 예정이며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JECFA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Tree nuts중 Aflatoxin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초안) (Proposed 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Tree nuts), 통조림 식품중 무기주석의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초안) (Proposed 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Inorganic Tin Contamination in Canned Foods) 및 국제무역에서 핵오염사고에 따른 식품중 방사능핵종의 지침수준 개정(초안) (Proposed Draft Guideline Levels for Radionuclides in Food for Use in International Trade)은 5단계 채택후 6단계로 진행하였다.

○ 어류 및 어류제품(Fish and Fishery Products)분과

총회는 동 분과에서 상정한 염장어 및 건조염

장어 규격 개정(초안) (Proposed Draft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Salted Fish and Dried Salted Fish of the Gadidae Family)을 5단계로 채택하였다.

○ 분석 및 시료채취(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분과

총회는 동 분과에서 상정한 적합한 분석방법 평가를 위한 지침개정(초안) (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Evaluating Acceptable Methods of Analysis)을 5단계로 채택하였다.

○ 유 및 유제품(Milk and Milk Products)분과

총회는 동 분과에서 상정한 탈지증발유와 야채 지방 혼합 규격(초안) (Proposed Draft Standard for a Blend of Evaporated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분말형태의 탈지유와 야채지방 혼합 규격(초안) (Proposed Draft Standard for a Blend of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in Powdered Form), 감미응축유 및 야채지방 혼합 규격(초안) (Proposed Draft Standard for a Blend of Sweetened Condensed Milk and Vegetable Fat), 체다 규격개정(초안) (Proposed Draft Revised Standard for Cheddar(C-1), 단보 규격개정(초안) (Proposed Draft Revised Standard for Danbo (C-3)) 및 유청치즈 규격개정(초안) (Proposed Draft Revised Standard for Whey Cheeses)을 5단계 채택 후 6단계로 진행하였다.

○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분과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제의 지침서(초안) (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과 영아용 조제식(및 특정의

료목적의 영아용 조제식) 규격개정(초안) (Proposed Draft Revised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을 5단계로 채택하고, 영아의 조제식 규격의 경우 정상 영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 조제식의 단일 규격안에 section A와 B를 구분하여 포함하기로 하고, section A 부분(정상 영아용 조제식)만 5단계로 채택하였다. 영·유아를 위한 곡류가공식품의 규격개정(초안) (Proposed Draft Revised Standard for Cereal-Based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도 5단계로 채택하였다.

(5) 신규규격 및 중단작업 승인

총회는 하부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신규규격 및 작업중지 규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 신규규격 승인 □

○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총회는 인삼(Ginseng Products)규격을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인삼품종을 포함하는 Codex 규격을 작성하고,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써 섭취되는 인삼에 적용가능한 규격을 작성하는 전제로 신규작업을 승인하였다. 인삼규격을 지역규격 또는 국제규격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국제규격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규격을 작성하여 5단계 채택 후 총회에서 규격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된장 규격(Fermented Soybean Paste (Doenjang))과 고추장 규격(Hot Pepper Fermented Soybean Paste (Gochujang))이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신규작업으로 승인하기로 했다는 54차

집행이사회는 권고사항을 언급하고, 요청되는 경우 곡류 및 두류분과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 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특정하거나 상세한 규격이 보다는 더 많은 범위의 규격을 포함할 수 있는 horizontal 규격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적절한 제목을 포함하여 모든 발효공제품과 관련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단일 규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는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동 사항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총회는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초기 단계에서 2개 규격의 작성을 위임하고, 최종 마무리는 곡류 및 두류분과위원회에서 완성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역 규격 또는 국제 규격으로 완성할지에 대한 여부는 5단계 채택이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 생명공학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Task Force on Biotechnology)

총회는 제26차 총회(2003. 6)에서 신규 생명공학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상기하고, 일본에 작업제안서와 업무분장(안)을 작성토록 요청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2009년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일본 대표는 향후 기금의 이용가능성이 확인되는 대로 신규 작업반을 주최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신규 작업반의 작업으로 "복제동물"과 "생물활성물질"에 대한 의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총회는 생명공학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에 대한 업무분장 및 작업제안서 (Draft Terms of Reference and the Project Proposal for the New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를 승인하였다.

○ 식품 수 · 출입검사 및 인증제도(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분과

총회는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분야 위생조치의 동등성 판정 지침서의 별첨 (Appendices to the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Sanitary Measures Associated with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과 관련하여 54차 집행이사회에서 별첨 작성시 식품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에서 논의한다는 의견에 합의하였다.

○ 식품표시(Food Labelling)분과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의 지침서 개정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의 경우 회원국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제27차 총회까지 신규규격 승인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 작업중지 규격 승인 □

○ 어류 및 어류제품분과(Fish and Fishery Products)

정어리 및 정어리 제품 규격 개정(초안)(Proposed Draft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Canned Sardines and Sardine-Type Products)은 제26차 총회(2003. 6)때에도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논의를 위해 어류 및 어류제품분과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금번 총회에서도 작업중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동 규격초안을 4단계로 유보하기로 결정함.

(6) Codex 전략계획

Codex 작업은 'Strategic framework 2003-2007' 및 '작업우선순위설정기준' 및 'Strategic Plan'에

따라 세부조치 및 활동이 결정되고 있으며 Strategic plan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Codex에서 개발중인 위해분석·지침 개발을 위한 조치계획은 제26차 총회(2003. 6)에서 채택과 동시에 관련분과위원회에 지침개발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 총회에서 53차 집행이사회(2004. 2)의 권고사항을 승인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위해 분석에 대한 특정 지침서 개발시, 신규작업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절차 검토 및 문서화에 대한 검토 요청, 위해분석지침간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 검토요청, 작업우선순위 설정기준의 개정을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 검토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제54차 집행이사회(2004. 6)에서는 2008~2013 6개년 계획 및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였으며, 전략 계획에는 전략목표, 우선순위항목 및, 여러 codex 활동 및 프로그램 목록등이 수재되어있다.

(7) Codex 의장 및 부의장 선출

Codex 위원회는 한 명의 의장과 3명의 부의장을 위원회 회원 중 대표, 부대표, 고문 가운데서 선출한다. 이 때 대표는 대표단 수석대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임원의 임기는 금번 총회가 끝난 시점으로 부터 차기 정기 총회(28차 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며, 금번 총회에서 의장은 스웨덴의 Dr. Stuart SLORACH, 부의장으로는 일본의 Hirosi YOSHIKURA, 캐나다의 Dr. Paul Mayers와 탄자니아의 Dr. Claude J.S. Moshia가 제26차 총회(2003. 6)이후로 재선임되었다.

(8) Codex 하부분과 및 특별작업반 의장국 선출

동 의제에서는 각 하부분과위원회 및 Task

Force의 의장국을 지명하였다.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는 향후 일본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덴마크가 의장인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Animal Feeding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현재의 하부조직의 의장국을 제시하였다.

□ 하부조직의 현 의장국 □

- Codex Committee on Milk and Milk Products : 뉴질랜드
- Codex Committee on Cocoa Products and Chocolate : 스위스
- Codex Committee on Fats and Oils : 영국
- Codex Committee on Sugars : 영국
-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 네덜란드
- Codex Committee on Food Hygiene : 미국
- 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 미국
-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 캐나다
- Codex Committee on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 헝가리
- 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 프랑스
-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 네덜란드
- Codex Committee on Natural Mineral Waters : 스위스
- 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 독일
- Codex Committee on Fish and Fishery Products : 노르웨이
- Codex Committee on Meat Hygiene : 뉴질랜드

- Codex Committee on Vegetable Proteins : 캐나다
- Codex Committee on Cereals, Pulses and Legumes : 미국
- Codex Committee on Residues of Veterinary Drugs in Foods : 미국
- Codex Committee on Fresh Fruits and Vegetables : 멕시코
-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 호주
-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ruit and Vegetable Juices : 브라질
-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 : 일본

(9) Codex 식품규격작업에 관한 FAO/WHO 합동평가 후속조치

Codex 식품규격작업에 관한 FAO/WHO 합동평가는 WHO와 FAO의 사무총장과 총회의 요청에 따라 Codex와 FAO 및 WHO의 식품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전문평가팀의 검토가 수행된 바 있으며, 동 평가팀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규격설정 우선순위, 총회개최시기 및 기타 분과위원회의 역할, 규격작업의 가속화 등 Codex 작업에 관한 총 42개의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동 의제는 FAO/WHO 합동평가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번총회에서는 Codex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분장 및 지역조정위원회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Codex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 업무분장 검토와 관련하여, Codex 회의 개최수 감소목적으로 Codex 일반과제분과위원회, 식품별분과위원회의

적정성, 과제별 중복영역 또는 미흡영역, 모든 분과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자문관팀을 채용(2004. 7 ~8)하여 업무방향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8차 총회(2005. 7)때 권고사항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총회는 지역조정위원회의 역할, 지역조정위원회의 회원국 및 업무분장, 회의간격 및 회의장소, 국가참여기록 등 지역조정위원회의 효율성, 지역조정위원회 직권상 의장으로서의 지역조정관 및 임원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회원국에게 공람하기로 결정하였다.

(10) Codex 하부분과 및 작업반에서 제기된 사항

동 의제에서는 하부분과위원회 및 작업반에서 제안한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위원회 의제중 54차 집행이사회에서 권고한 식품첨가물의 일반기준(GSFA) 및 식품중 오염물질 및 독소의 일반기준(GSCTF)의 수정사항 및 GSCTF와 Codex 규격간의 관계를 승인하고, GSCTF와 일치하지 않는 Codex 식품별규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및 독소의 최대허용기준을 목록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JECFA 우선순위작업반은 즉석면증 과산화물가는 안전성 문제가 아니므로 JECFA 평가대상으로 제안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점에서 과산화물가와 식품독성학지수와 관계를 증빙할 자료가 없음을 언급하는 한편 식용유의 안전성을 조사연구할 WHO 프로젝트를 공지하였다. 이에 일본대표는 CCFAC에서 위해평가를 근거로 판단된 사항이 아니므로 즉석면 규격초안에 과산화물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위해분석과

관련한 미생물위해평가의 수행을 위한 원칙 및 지침서, 미생물위해관리수행을 위한 원칙 및 지침초안을 승인하였다.

식품의 수출입검사·인증제도분과위원회의 식품검사와 관련된 위생조치 동등성 판정에 관한 지침서의 별첨작성을 신규작업으로 승인하였다.

유 및 유제품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파메산 규격에서 파메산 명칭 및 지적재산권보호측면에서 Codex의 합법적 기준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파메산 치즈에 대한 신규 규격설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양분되었다. 동 신규규격 제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28차 총회때 까지 동 규격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식품표시분과위원회의 의제중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작업개시(규정개정) 여부에 대해 회원국은 양분화된 입장이었으며,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은 작업진행에 찬성, 미국, 캐나다 등은 작업진행에 반대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물사료 작업반의 경우 동물사료분야의 작업 지속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덴마크에서 동 작업반의 의장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11) Codex 위원회 및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동 의제는 CODEX와 타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Codex와 국제정부간기구인 OIE, Codex와 국제비정부기구인 ISO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국제 정부기구와의 관계

- Codex와 OIE와의 관계

OIE 대표는 위원회에게 특히 가축생산 측면에

서의 식품 위해요소와 관련하여 OIE와 Codex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대표는 SPS 협정의 3개 국제 규격설정기구인 Codex, OIE, 그리고 IPPC 사이의 특화된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FAO와 WHO 대표는 Codex와 OIE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언급하였다. 또한, Codex/OIE 간 문서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 즉, 향후 협력기구는 Codex의 하부조직이며, OIE와의 협력은 규격 제정의 초기(초안) 단계이며, 두 기구의 독립성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 개발의 필요성, OIE와의 협력은 건전한 상호동의를 근거함을 언급하였다. Codex와 OIE간 협력 강화에 대하여 CCGP에서 지침서 마련중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국제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ISO는 Codex와 ISO간의 장기 협력과 두 기구의 상보적인 업무 활동을 강조하고,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Requirements (ISO 22000)와 Traceability Systems in the agricultural food chain - General principle for design and development (ISO 22518)를 포함한 Technical Committee 34 등 관련 업무를 강조하였다.

(12) CODEX 참여증진을 위한 FAO/WHO 프로젝트 및 신탁기금

동 의제는 Codex 회원국의 Codex 참여증진을 위해 신탁기금(Trust Fund) 마련을 위한 FAO/WHO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의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FAO와 WHO의 Project와 신탁기금에 대한 4회 진행보고서를 보고하고, 신탁기금이 500,000 US\$에 도달된 2004년 3월 부터 운영을 착수하였을 공지하였다. 총

회에서 국가간 협력과 신탁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Codex 접촉창구의 주요역할을 강조하였고, 신탁기금의 운영은 Codex 접촉창구를 통한 별도의 channel 필요성에 동의함. 또한, Codex 회의참석보다는 Project를 위한 신탁기금의 사용이 바람직함을 지지하였다.

(13) FAO 및 WHO에서 제기된 사항

- 과학적 자문 관련 사항

○ 과학적 자문 관련 진행사항

FAO 대표는 Codex 및 회원국에 대한 과학적 자문규정의 FAO/WHO 협의과정진행보고서 보고하였다. Codex 및 회원국에 관한 과학적 자문규정의 FAO/WHO 워크샵(2004. 1월, 스위스 제네바) 개최되었으며, 워크샵 결과 과학적 자문규정의 필수원칙·정의·범위, 관리문제,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개도국 참여 증진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 Codex 하부분과위원회의 과학적 자문 요청

금번 총회에서 기능성식품, 활성염소, 대량 유지의 운송에 대한 과학적 자문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하고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CCFAC)과 식푸위생분과위원회(CCFH)에서 식품에서의 활성염소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회의에 대하여 업무분장 초안을 작성중임을 언급하였다. 과학적 자문 규정의 우선순위는 회원국 정부보다는 CODEX의 하부 조직에 우선시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 항생제 내성

WHO 대표는 제48차 집행이사회 결의안으로

향후 항생제 내성 대책 설정을 위한 FAO/WHO/OIE 워크샵이 2회에 걸쳐 개최되었음을 언급하고, 항생제 내성 억제대책을 위한 관련전문용어, 위해평가 정책 및 위해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IE는 비임상용 항생제 사용 유래 항생제 내성 억제를 위한 규격이 이미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제2차 워크샵 권고사항 및 CODEX/OIE의 상호협약에 의한 비임상용 항생제 사용 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T/F 구성을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는 향후 항생제 내성 ad hoc Task Force에 대하여 총회 개최전 Project Document를 제출하여 의장국 유치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하여 18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Task Force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제54차 집행이사회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향후,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향후 의견 수렴(Circular Letter)을 통해 제55차 집행이사회에 반영되어 제28차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 식품안전 및 품질의 능력배양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3가지 주요 분야 i) 식품안전사항 관련 국제·지역/하위지역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 운영조직; (ii) field project; 와 (iii)지침과 훈련지침에 대한 FAO/WHO 능력개발 활동을 보고하였다. 총회는 국제 식품안전 전문가 네트워크(INFOSAN)이 공중보건 관련 다양한 정보의 신속전달 배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 함을 언급하였다. INFOSAN은 긴급한 상해 및 사망 위험이 있는 식품안전위급(응급)사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고하였다.

<제27차 총회때 채택된 8단계, 5/8단계, 5단계 목록, 신규작업, 철회규격 및 작업중지규격 목록 >

■ 8단계 채택 목록

관련분과	채택 규격
CAC	우수동물사료실행규범안 (Code of Practice on Good Animal Feeding)
CCFAC	GSFA 식품분류체계(안) (Food Category System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CFAC	땅콩 중 Aflatoxins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안)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Peanuts)
CCFAC	식품중 납 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안)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Lead Contamination in Foods)
CCFAC	GSFA Table 1 개정(초안, 안) (Revisions to Table 1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CFFP	염장 대서양청어 및 염장 청어에 대한 규격안 (Standard for Salted Atlantic Herring and Salted Sprat)
CCFFP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증명서 모델안(위생증명서) (Model Certificate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sanitary certificate))
CCFFP	급속냉동 바다가재에 대한 규격 개정안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Quick Frozen Lobsters)
CCFFV	오렌지 Codex 규격안 (Standard for Oranges)
CCFH	유 및 유제품에 대한 위생실행규범초안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Milk and Milk Products)
CCFL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안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CFL	생선스틱에 관한 규격 개정안(생선속 함량표시)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Quick Frozen Fish Sticks (Fish fingers), Fish Portions and Fish filets, Breaded or in Batter (Labelling section))
CCFL	유기가공식품 지침서 개정안: Annex 2-표 1 및 표2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 Revised Annex 2 - Tables 1 and 2)
CCMAS	시료채취일반지침서 (General Guidelines on Sampling)
CCMAS	측정 불확실성에 관한 지침서 (Guidelines on Measurement Uncertainty)
CCMAS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의 분석방법(Methods of Analysis for Additives and Contaminants)
CCMAS	올리브유 및 올리브 포마스유 규격에 포함될 분석방법(Methods of Analysis (for inclusion in the Standard of Olive Oils and Olive Pomace Oils))
CCMAS	지명된 식물성유지 규격에 포함될 분석방법(Methods of Analysis (for inclusion in the Standard of Named Vegetable Oils))
CCPR	잔류농약의 MRLs (MRLs for Pesticides)

■ 5/8단계 채택 목록

관련분과	채택 규격
CCFAC	GSFA Table 1 개정(초안, 안) (Revisions to Table 1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CFAC	61차 JECFA에서 제기된 식품첨가물 및 성상 및 순도기준 (Specifications for the Identity and Purity of Food Additives(Category I) arising from the 61st JECFA Meeting)
CCFAC	식품첨가물의 INS 번호(초안)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INS) of Food Additives)
CCFFP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실행규범초안(양식 및 급속표면냉동 어류제품) (Code of Practice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aquaculture and quick frozen coated fish products))
CCFICS	식품안전 긴급상황 발생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Safety Emergency Situations)
CCPR	잔류농약의 MRLs안 (MRLs for Pesticides)

■ 5단계 채택 목록

관련분과	채택 규격
CCFAC	카드뮴의 최대허용기준(안) (Draft Maximum Levels for Cadmium in : rice, polished:wheat grain : potato : stem and root vegetables ; leafy vegetables ; and, other vegetables)
CCFAC	Tree Nuts중 Aflatoxins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안) (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Tree Nuts)
CCFAC	통조림 식품중 무기주석오염의 오염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안) (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Inorganic Tin Contamination in Canned Foods)
CCFFP	국제무역에서 핵오염사고에 따른 식품중 방사능핵종의 지침수준의 개정(안) (Draft Revised Guideline Levels for Radionuclides in Foods for Use in International Trade)
CCFFP	염장어류 및 건조염장어류에 대한 개정안 (Draft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Salted Fish and Dried Salted Fish)
CCFFV	어류 및 어류제품의 실행규범안(Draft Code of Practice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aquaculture))
CCMAS	토마토 Codex 규격초안 (Proposed Draft Codex Standard for Tomatoes)

해외식품행정정보

관련분과	체택 규격
CCFAC	적합한 분석방법 평가를 위한 지침초안 (Draft Guidelines for Evaluating Acceptable Methods of Analysis)
CCMMP	증발탈지유 및 식물성지방의 혼합 규격안 (Draft Standard for a blend of Evaporated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CCMMP	탈지유 및 분말형태의 식물성지방의 혼합 규격안(Draft Standard for a blend of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in Powdered Form)
CCFAC	감미응축탈지유 및 식물성지방의 혼합 규격안(Draft Standard for a Blend of Sweetened Condensed Skimmed Milk and Vegetable Fat)
CCMMP	CHEDDAR 치즈에 대한 규격 개정(안) (Draft Standard for CHEDDAR(C-1))
CCMMP	DANBO 치즈에 대한 규격 개정(안) (Draft Standard for DANBO(C-3))
CCMMP	유청치즈에 대한 규격 개정(안) (Draft Revised Standard for Whey Cheeses)
CCNFSDU	조제유에 대한 규격개정안 (Draft Standard for Infant Formula)
CCNFSDU	영·유아 및 유아를 위한 곡류가공식품의 규격개정안 (Proposed Draft Revised Standard for Processed Cereal-based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CCNFSDU	잔류농약의 MRLs 안 (Draft Maximum Residue Limits(MRLs) for Pesticides)
CCPR	카드뮴의 최대허용기준(안) (Draft Maximum Levels for Cadmium in : rice, polished:wheat grain ; potato ; stem and root vegetables ; leafy vegetables ; and, other vegetables)

■ 현행 규격 삭제 목록

관련분과	상정안
CFAC	식품첨가물의 일부 최대허용기준(Maximum Levels for additives(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CCFH	건조유의 위생실행규범(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Dried Milk)
CCPR	최대잔류기준 (Codex Maximum Residue Limits)
-	포장물질(Packing media (composition and Labelling))(포장물질/과일통조림에 관한 지침서로 대체)
CCMAS	포장식품의 시료채취계획(시료채취에 관한 일반지침서로 대체)

■ 신규 작업 목록

관련분과	재택규격초안
CAC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정부간 작업반의 업무분장 및 작업제안서(안)(Draft Terms of Reference and the Project Proposal for the New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
CCASIA	인삼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for Ginseng)
CCASIA/ CCCPL	발효콩제품의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for Fermented Soybean Paste (Doenjan))
CCASIA/ CCCPL	고추장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for Hot Pepper Fermented Soybean Paste(Gochujang))
CCFICS	식품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에 관한 지침서의 별첨 초안(Proposed draft Appendices to the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Sanitary Measures Associated with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CCFICS	전자증명서의 원칙 초안(Proposed draft Principles for Electronic Certification)
CCFICS	수입식품의 위해근거의 검사를 위한 지침서 초안(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Risk-based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CCFAC	아몬드, 브라질넛, 헤즐넛 및 피스타지오의 시료채취계획초안(Proposed Draft Sampling Plans for Aflatoxins in almonds, brazil nuts, hazelnuts and pistachios)
CCFAC	산분해식물성단백질 및 산분해식물성단백질 함유 식품중 3-MCPD(Chloropropanol)의 최대허용기준초안(Proposed draft maximum levels for 3-MCPD (Chloropropanol) in Acid hydrolyzed Vegetables Proteins (acid-HVPs) and acid HVP containing products)
CCFAC	식품중 오염물질 및 독소의 일반규격의 개정초안 (CCFAC Proposed Draft Revision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s)
CCFH	영유아용 식품의 국제권고실행규범 개정초안(Proposed Draft Revision of the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Foods for Infants and Children (CAC/RCP 21-1979 -amended 1981))
CCPR	특정 잔류농약의 최대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목록(Priority List for the establishment of MRLs for certain pesticides)
CCPR	식품 및 동물사료의 분류개정(Limited Revision of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1993))
CCGP	규정집중 식품의 정의 개정(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Food" in the Procedural Manual)

■ 작업중지 목록

관련분과	작업중지규격
CCFFP	정어리통조림 및 정어리 형태의 제품의 규격 개정초안(Proposed Draft Amendment to the Standard for Canned Sardines and Sardine-Type Products (Clupea bentincki))
CCFFP	잡식성 어류의 목록 설정 (Establishment of a list of predatory fish)
CCFICS	식품검사 및 인증체계와 관련된 기술적 규정의 동등성 판정에 관한 지침서 초안(Proposed draft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Associated with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CCMH	육류의 위해근거로 한 사후검사에 관한 별첨 초안(Proposed draft Annex on Risk-Based Post-Mortem Examination Procedures for Meat)
CCMH	육류 위생의 절차 관리의 미생물학적 검증에 관한 별첨 초안(Proposed draft Annex on Microbiological Verification of Process Control of Meat Hygiene)
CCFAC	GSFA의 3단계 및 6단계의 식품첨가물 Proposed draft (Step 3) and draft (Step 6) food additive provisions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GSFA)
CCFAC	활성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실행규범 초안(Proposed draft Code of Practice for the Safe Use of Active Chlorine)
CCFAC	DON의 최대허용기준 초안(Proposed Draft Maximum Level for Deoxynivalenol)
CCFAC	카드뮴 최대허용기준(과일, 가축, 돼지, 양, 가금육, 말, 허브, 버섯, 셀러리, 건조대두 및 땅콩(Draft maximum levels for cadmium in fruits; meat of cattle, pigs, sheep, and poultry; horse meat; herbs, fungi (edible); celeriac; soybeans (dry); and, peanuts,)